

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·실험 승인신청서

※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 (앞쪽)

접수번호		접수일		처리기간		60일	
신청인 (시험연구 기관)	상호			사업자등록번호(법인등록번호)			
	대표자 성명			전화번호			
	사업장 주소						
과제명		[] 신규 [] 계속 [] 변경					
연구기간		. . . ~ . . . ()간					
연구책임자	성명			직위			
	전자메일 주소			전화번호			
	주소						
연구시설	허가번호(신고확인번호)			안전관리등급			
				BL-			
	주소						
	생물안전관리책임자		성명		소속		

심사요청사항 (해당사항 모두 √ 표를 합니다.)

- [] 1. 종명(種名)까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인체병원성 여부가 밝혀지지 아니한 미생물을 이용
- [] 2. 척추동물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단백질 독소를 생산할 능력을 가진 유전자를 이용
- [] 3. 자연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생물체에 억제내성 유전자를 의도적으로 전달 (보건복지부장관이 안전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)
- [] 4. 국민보건상 국가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병원미생물을 이용
- [] 5. 포장시험(圃場試驗) 등 환경방출과 관련된 실험
- [] 6. 그 밖에 국가책임기관의 장이 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해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 또는 실험

「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」 제22조의2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6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5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개발·실험 승인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(관계 중앙행정기관) 장관(처장) 귀하

첨부서류	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합니다.		
기재방법	관계 중앙행정기관은 다음 표에서 심사요청사항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용도에 따라 선택하여 적습니다.		
	심사요청사항	유전자변형생물체의 용도	관계 중앙행정기관
	제1호부터 제4호까지	※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용도와 무관	보건복지부
	제5호 및 제6호	시험·연구용	과학기술정보통신부
		농림·축산용	농림축산식품부
		산업용	산업통상부
		보건의료용	보건복지부
		환경정화용	기후에너지환경부
		해양수산용	해양수산부
		식품·의료기기용	식품의약품안전처

처 리 절 차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